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97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6월 12일

-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민영완)

가. 제안사유

○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
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: 1,696명(변동 없음)

▶ 4급 이상(+2명), 5급 이하(-2명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제417회 정례회 기간 중 개정되는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2과 1팀이 증가됨에 따라
 -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이상 2명을 증원하고, 5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였으며, 충청북도만이 17개 시·도 중 문화유산과가 없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(문화유산과)를 설치하고,
-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부서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함에 따라,
-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4,828	-					
정무직 계	3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일반직 계	1,698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81	55	8	5	7	5	1
5급이하 소계	1,584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별정직 계	12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					
연구직 계	197	-					
연구관	31			31			
연구사	166	-					
지도직 계	30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4	-					
소방직 계	2,845	-					
소방정	18	5		13			
소방령이하	2,827	-					
교육공무원 계	43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·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